

#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와 우리의 對應

李 揆 哲

〈中小企協 中央會 國際部振興2 課長〉

## 1. UR의 背景

前後 世界貿易의 自由化 實現을 위해 1948年 發效된 「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現在 97個國의 正會員國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들의 貿易量또한 世界貿易의 85%를 넘고 있다. 各 會員國은 自國의 貿易關係法을 GATT 規範에 一致시킬 義務를 지고 있어 GATT는 名實共히 世界貿易에 關한 統一規範으로서의 役割을 充分히 해 왔다 하겠다. 또한 GATT는 世界貿易自由化를 위해 多者間協商方式에 依해 實現함으로써 雙務主義, 地域主義 등의 保護主義의 畧체를 排除함을 理想으로 하여 其間 7차례의 多者間協商을 통해 關稅率引下 및 非關稅障壁緩和等 世界교역의 自由, 無差別, 多者主義 實現에 적지 않은 參與를 해온 셈이다.

그러나 世界經濟가 80年代以後 多極化하면서 世界名國은 GATT를 교묘히 離脫하거나 其他 여러가지 貿易關聯政策 및 制度를 두어 自國의 關心品目 또는 脆弱分野를 保護하는 등 新保護貿易主義가 만연되기에 이르렀으며, 더우기 美國은 80年代 以後에 自

國의 經濟沈滯가 이러한 新保護貿易主義에 立脚한 各國의 通商政策에 基因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 解決을 위하여는 새로운 多者間協商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出帆시켜 美國의 比較優位分野인 서비스, 投資, 知的財産權을 GATT內로 規範化함으로써 挽回할 수 있다는 強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하겠다. 여기에 日本은 美國으로부터의 雙務的 市場開放壓力 및 其他 通商規制措置를 稀釋시킬 수 있다는 計算下에 UR의 開始를 積極 贊同하고 또한 EC諸國, 기타 開途國 및 先進國들도 多小의 立場차이는 있으나 UR協商開始를 自意半 他意半으로 同調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해서 1986年 9月 南美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UR協商이 開始되기는 하였으나 여지껏 協商妥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分野別 協商이 具體化될수록 各國의 利害가 尖銳하게 對立되어 先進國一部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國家가 積極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西方7個國(소위 G-7) 頂上은 지난 7月9日 美國 휴스턴에서 UR의 成功的 妥結을 主要論題로 삼아 UR協商妥結을 서두르고는 있으나 서비스, 農산물등의 分野에서 極甚한 利害對立으로 全體的인 協商妥結

은 아직도 不透明한 상태이다.

## 2. UR의 意義

UR은 GATT體制의 제8차 多者間貿易協商으로서 從來의 라운드(Round)가 주로 關稅率引下(제6차 Kennedy Round: '64- '67)와 非關稅障壁緩和(제7차 Tokyo Round: '73- '79)를 이끌어 낸것에 비해 ① 市場接近(Market Access)擴大, ② GATT 規律強化 및 ③ New Issue(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에 關한 議題를 廣範圍하게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UR은 그 어느 때보다 世界各國의 敏感한 反應과 非常한 關心을 끌고 있는 Round라 하겠다. UR의 協商體系는 GATT에 貿易協商委員會(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두어 多者間協商에 關한 모든 權限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고 TNC率下에 GNG(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와 GNS(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를 두어 相互 有機的인 關聯을 갖도록 하고 있다. GNG에는 主要 Item別로 14個의 協商分野가 있고, GNS의 서비스 交易分野 및 TNC直屬의 監視機構(UR協商期間中 各國의 新規保護措置導入을 차단하고 既存規制措置의 凍結과 撤廢履行을 監視) 등 모두 16個의 協商分野로 構成되어 있다. 各 分野別 協商內容을 簡略히 紹介하고 우리의 對應策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 3. 各 分野別 內容

### I. 關稅(Tariffs)

關稅部門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先進國이 實行關稅率 33.3%引下를 施行하고 있으나 韓國, 헝가리를 除外한 여타 開途國은 이 水準에 훨씬 못 미치는 關稅引下를 固守하고 있어 先進國의 이에 對한 壓力이 加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農産物, 사치성消費

財, 尖端技術産業, 有望輸出産業品目 및 其他 競爭力이 脆弱한 品目を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工産品에 對해 關稅率引下目標가 達成된 셈이어서 關稅率引效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向後 關稅率의 自律的 引上은 어렵게 됨으로 긴급關稅, 反덤핑·相計關稅率 國際的 慣行인 國內産業 被害救濟手段 等に 依한 方案을 效果的으로 活用하는 수 밖에 없다.

### II. 非關稅(Non-tariff Measures)

各國의 非關稅措置(數量制限 等)에 對해 關心國家間 Request/Offer 방식에 依해 우리나라는 特別法上的 輸入檢査, 輸入許可制, 輸入先多變化制度, 特別消費稅 等の 撤廢를 要求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89, 11월 GATT國際收支條項(제18조, 3항)受惠對象에서 卒業하게 됨에따라 特別法上的 各種 非關稅措置를 自進撤廢해야 할 立場이며, 한편 多者間規制方式에 있어서는 原產地證明(Rules of Origin)과 船積前檢査(Preshipment Investigation)가 協商 進行中이나 EC의 強力한 反對로 具體的인 規程의 改定作業은 UR受結以後에나 別途 마련되지 않을가 하는것이 專門家들의 推測이다. 다만 原產地證明이나 船積前檢査는 우리에게 이 輸出障壁要素라고도 할 수 있기때문에 이에 對한 國際規範이 緩和되는 方向으로 改定되는 경우, 우리의 輸出條件은 多少 改善될 것으로 보인다.

### III. 天然資源(Natural Resource-Based Products)

鑛物, 林·水産物等 天然資源의 關稅, 非關稅障壁의 緩和 및 撤廢를 目標로 協商이 進行中이나 美國, 日本, EC等 主要先進國의 關心不足으로 이 部門에 있어서는 關稅 및 非關稅協商分野의 結果를 受容하는 線에서 마무리 될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資源保有國(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등)과 資源輸

入國(EC, 韓國, 日本 等) 間的 協商對象範圍 및 協商方式에 關하여 意見差異는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IV. 섬유(Textiles and Clothing)

開途國들이 가장 期待를 모으고 있는 關心分野로써 現在의 多者間섬유協定(Mult; Fiber Arrangement)을 漸次 縮小 내지 撤廢하여 섬유류에 關한 全般的인 交易自由化를 이루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나 美國과 캐나다 등은 現行 國家別 Quota 制를 總量 Quota制로 轉換시킬것을 主張하는 反面 섬유수출개도국협의회(Int'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한국, 중국, 인도, 홍콩 등 22개 섬유수출국으로 構成)는 MFA의 撤廢를 主張하고 EC, 日本도 이에 同調하고 있어 MFA의 段階的 撤廢는 尙早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分野에서 美國과 캐나다가 양보하는 玆가로 農産物, 서비스, 投資, 知的財産權等의 分野에서 開途國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양보를 얻어 내느냐 하는것이 注目된다 하겠다.

#### V. 農産物(Agriculture)

各國의 農産物 交易障壁을 緩和하여 世界 農産物交易自由化를 實現하자는 것이 이 分野의 主要 關心事로써 여기서 다루어지는 重要協商議題內容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國內補助金(Internal Support)의 撤廢 또는 減縮: 一部 限定된 許容補助金を 除外하고는 段階的인 補助水準의 減縮에 原則的으로 合意하고 있으나 基本的인 許容補助金の 範圍에 對해서는 各國의 尖銳한 利害相反으로 意見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2. 國境保護(Border Protection): 모든 非關稅措置를 關稅化(Tariffication)하는 方案에는 原則的으로 合意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韓國, 日本, EC 등은 食糧安保, 地域的均等發展等 農産物의 非交易的要因(Non-trade

Concerns)을 들어 一部 主要 農産物에 對한 關稅化는 反對하고 있는 立場이다.

#### 3. 輸出競争(Export Competition)

各國의 輸出競争에 큰 影響을 미칠 모든 輸出補助金の 減縮에는 合意를 보고 있으나 그 履行期間에 對하여는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 4. 食品衛生 및 動·植物檢疫(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

關聯 國際基準에 合致되도록 運營함으로써 貿易規制效果를 最少化하자는 것인데 대체로 合意가 이루어지고 있다.

#### 5. 開途國 優待(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開途國의 經濟發展을 위해 어느 程度의 農業開發政策은 認定하나 國際貿易에 影響이 없고 國內價가 國際價格보다 높지 않은 범위內에서만 許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V. 熱帶產品(Tropical Products)

對象品目은 主로 熱帶飲料(커피, 코코아, 茶等), 양념類(후추, 계피), 植物性기름(나화생, 팜油, 유자油等), 담배, 열대 果實類(바나나, 망고等), 열대 産木材 및 고무, 황마等 7個品目群에 263個品目으로서 다음의 3가지 原則이 提起되고 있다.

1. 非加工 產品(Unprocessed Product)에 對한 關稅撤廢

2. 半加工(Semi-Processed), 加工 產品에 對하여는 關稅撤廢 또는 引下

3. 熱帶產品交易에 影響을 주는 모든 非關稅措置(Non-tariff measures)의 撤廢 혹은 縮小

그러나 熱帶產品은 農産物, 關稅, 및 非關稅協商그룹에서 重疊的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特別히 獨立的인 協商成果가 도출되기는 어렵다 하겠다.

#### VII. 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

第7次東京라운드에서 非關稅障壁에 關하여 10個의 多者間協定 Code가 締結되었으나 加入國이 적었고 適用上 不明確한 點이 많아 이번에 다시 既存 Code의 明瞭化와 擴大를 目標로 反덤핑協定, 輸入許可節次協定, 技術障壁協定 및 政府調達協定等이 重點的으로 論議되고 있다.

특히 反덤핑 協定에 있어서 韓國, 日本, 香港等 主要 輸出國은 덤핑調查開始要件의 強化, 反덤핑關聯概念의 明確化를 要求하는 反面 美國, 호주等은 반복덤핑, 常習덤핑等 새로운 Dumping 概念의 導入을 主張하고 있다.

#### VIII. 緊急輸入制限 (Safeguards)

GATT는 원래 國際交易의 完全自由化를 目標로 하고 있으나 「輸入急增으로 因한 國內産業의 被害를 救濟하기 위해 限時的으로 例外的인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이 바로 GATT 19條의 Safeguards條項이다. 이러한 制限措置를 先進國은 輸出國家別로 選別適用 (Selectivity) 하고 있는바, 現行 輸出自律規制 (Voluntary Export Regulation), 市場秩序維持 (Orderly Market Agreement) 등 소위 회색措置 (Grey-Area Measures)가 그것인데, 先進國들은 이러한 회색조치를 撤廢하는 대신 Safeguards를 選別適用할 수 있게끔 同規程을 改定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反面 韓國等 輸出依存國 大多數는 最惠國待遇原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適用을 固守하고 있어 어느 線에서 妥結될지는 未知數이다.

#### IX. 補助金·相計關稅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補助金 및 相計關稅와 關聯된 GATT 規程을 先進國들은 可及的 嚴格하게 制限하려고 하고 韓國等 主要輸出國들은 先進國들의 姿意的인 相計關稅發動을 制限하는 側面에서 關係規定을 改正하고자 한다. 補助金を 禁

止對象, 相計對象, 許容補助金으로 區分하는데는 參加國의 異議가 없으나 補助金の 適用對象에關하여는 合意를 보지 못 하고 있다.

#### X. GATT條文

現行GATT條項中 論議되고 있는것은 제2條1項b(其他과세 및 賦課金の 讓許稅率表記載), 제17條(國營貿易), 제18條(BOP를 理由로 한 輸入制限), 제24條(關稅同盟 및 自由貿易協定), 제25條5項(義務免除), 제28條(讓許의 修正)等으로서 大部分은 거의 異議가 없으나 第18條의 境遇 先進國은 同規定을 強化하여 開途國의 國際收支 (Balance of Payment) 를 理由로 한 無分別한 輸入規制를 막으려하고 이에 反해 開途國은 現行規程의 存續維持를 主張하고 있다.

#### XI. GATT機能強化 (Function of GATT System)

國別 貿易政策檢討 (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IMF, IBRD와 GATT의 關係強化 및 GATT의 國際機構的 性格으로서의 格上等이 主要 論議事項이나 UR協商終結以後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創設과 關聯하여 具體的인 論議가 다시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 XII. 紛爭解決 (Dispute Settlement)

가장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GATT의 紛爭解決節次는 GATT 22條(協議)와 23條(無效化 또는 侵害)로써 먼저 紛爭當事國間에 協議를 勸誘하고 協議에 依해서도 解決되지 않는 境遇에는 1979年 東京라운드에서 合意된 諒解覺書 (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에 依해 解決되도록 하고 있으나 法的拘束力이 없어 實效性이 없고 다만 問題되는 것은 Panel報告書 (GATT 23條1項에 依據妥當한 期間內 調

停不能詩 理事會에 Panel設置要求와 함께 紛爭當事國間 合意로 作成·提出되는 Report) 採擇에 있어서 그 決定方法을 Consensus-2(當事國의 投票權을 除外시키는 方式)로 하느냐 Consensus(滿場一致) 方式으로 하느냐 인데 韓國等 主要 輸出國은 後者인 Consensus方式을 主張하고 있다.

### XIII. 貿易關聯投資(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貿易關聯投資는 한나라의 經濟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됨으로 投資誘致國 入場인 開途國은 外國資本의 浸透와 國內市場의 攪亂을 우려하여 投資關聯制限措置를 正當化 하려는 立場이고 美國, 日本, EC等은 多少 意見差異를 보이고는 있으나 大體로 制限措置의 緩和를 要求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 海外投資에 있어서는 先進國과 같은 入場이나 外國企業의 國內進出에 있어서는 開途國과 같은 立場을 取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드래도 우리는其間 製造業部門의 投資制限措置를 많이 撤廢한 것으로 認定을 받아 協商結果에 따른 追加的 負擔은 거의 없을 것으로 豫想되며 오히려 投資對象國인 東南亞國家等の 投資環境이 改善될 것을 期待해야 하는 入場이다.

### XIV. 知的財産權(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80年代 중반 以前만 해도 知的財産權保護는 工業所有權과 著作權等 傳統的 知的所有權分野를 中心으로 世界知的所有權 機構(WIPO)에서 다루어 오다가 GATT에서 論議된 것은 東京라운드때 “偽造商品 交易防止協定” 締結 움직임에서 發端이 되어 最近 美國等 先進國들이 特許權, 商標權, 議決權, 著作權, 著作隣接權, 半導體集積路配置設計, 營業秘密等を 對象으로 GATT體制內에서 새로이 規範制定할것을 要求하고 있으나 先進國以外的 余他國은 이에 反撥하고

있어 協商結果가 매우 注目되는 分野이다.

### XV. 保護措置 凍結 및 撤廢의 監視機構(Standstill & Rollback Surveillance Body)

이는 協商開始와 함께 自國의 새로운 保護主義措置를 防止하고 既存 保護主義措置도 段階的으로 除去하며 이를 監視하는 機能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協商議題라기 보다는 協商의 前提條件인 性格에 가깝다. 그러나 現在로는 美國을 除外한 大部分의 國家가 美國의 슈퍼301條를 큰 Issue로 삼아 非難을 퍼 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XVII. 서비스 交易自由化

GATT集計에 依하면 88年の 서비스交易은 거의 6千億佛에 이르러 世界 總交易量의 16%를 넘고 그 增加率도 商品交易의 2배를 넘고있다. 우리나라의 境遇도 88年 基準 國內 總生産額의 57%, 總고용의 50.1%를 서비스 産業이 차지하여 그 比重이 매우 높은 편이나 國際競爭力은 오히려 商品(製品) 分野보다 낮다는 指摘이다. 서비스分野에는 各 分野(金融, 通信, 交通, 建設, 觀光, 專門職서비스, 勞動力移動, Audio/Visual서비스等) 別 交易自由化를 爲한 概念과 原則을 內容으로한 分野別註釋書(Sectoral Annotation)를 GATT事務局에 提出(韓國은 10月 10日提出)하여 個別的으로 檢討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建設部門에 있어서는 韓國이 主導權을 잡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建設에 있어서 主要 爭點은 人力, 裝備等 生産要素의 移動範圍, 政府發注工事의 包含여부,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等이라 하겠다. 設計, 監理等 高附加價値의 Engineering部門에 比較 優位가 있는 先進國은 建設工事に 必要한 管理者, 特殊技術者 및 熟練工 만을 移動할 것을 主張하는 反面 印度, 브라질等 開途國은 雜役夫인 單純勞動者까지 包含시킬 것을 要求하고, 建設重裝備의 境遇도 先進國은

自由로운 移動을 主張하나 開途國은 이에 反對하는 入場이다. 政府發注工事に 있어서 OECD先進12個國은 軍需品, 通信施設等 保安上의 理由를 들어 施設自由化를 反對하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大部分의 國家는 特殊한 경우外에는 모두 開放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市場接近 및 內國人待遇에 있어서도 韓國은 入札過程의 審査基準을 公正하게 하기 위해 外國의 資格證도 內國人과 同一하게 認定토록 하며 第3國의 工事實績도 認定하여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審査基準을 作成·公開하는 內容의 明文化를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先進國들은 宣言的 意味만을 規定化하고 具體的인 것을 讓許協商에서 다루자는 立場이며 이에 對해 後進國들은 거의 無關心한 狀態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競爭力있는 單純施工土木分野는 UR이 締結되어도 큰 問題가 없으나 Plant 等 高技術分野의 工事나 엔지니어링 등의 技術用役分野는 國內建設業界의 自體 競爭力培養에 必要한 時間確保를 考慮하여 開放日程을 段階別로 늦추는 線에서 協商을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 要求된다. 또한 製造業에 비해 落後된 工程의 自動化, 工法의 科學化를 앞당기기고 建設産業에 對한 그릇된 認識(무조건 싼값에 應札하고 工期短縮等에 依한 勞賃差益에만 關心)을 轉換하여 UR協商으로 因한 實益을 最大化하는 業界의 自救努力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 4. 綜合的인 對應方案

##### I. 關稅 및 非關稅

既述한 바와 같이 關稅 및 非關稅의 緩和는 必然的인 點에서 國內市場의 全面 開放과 함께 製造業界는 이에 對備하여 生産性 向上 및 新製品開發로 品質과 價格面에서의 輸出競爭力을 提高하고 競爭力이 限界點에 이른 一部 勞動集約産業은 資本 및 技術集

約的 産業으로의 移行을 위해 斜陽産業의 合理的 調整等 産業構造調整의 加速化가 이루어 지도록 政府·企業이 함께 努力해야 하며 急速한 輸入開放에 따른 業界의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活用에 必要한 利用節次의 簡素化 및 利用案內의 積極 弘報等 마련에 모든 力量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製造業(특히 中小企業製造業)의 領域保護을 위해 該當製品의 輸入動向을 수시 파악 點檢하여 適切한 支援等の 彈力的 運營도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 II. 서비스分野

이 分野는 워낙 廣範圍하고 多様하나 그 中에서도 金融과 通信이 가장 競爭力이 弱하며 특히 通信은 거의 모든 業種에 關聯되는 核心産業으로서 서비스 分野가 段階的으로 開放되는 境遇 通信部門에 關한 對應策이 格外히 要求되는바 그 主要 對應方案은 다음과 같다.

1. 外國人 直接投資에 對備하여 各種國內 서비스 關聯法規의 整備強化.
2. 競爭力이 脆弱한 通信分野에 外國企業이 進出할 것에 對備하여 合理的인 通信體系 確立.
3. 一部 脆弱한 서비스業種의 構造調整과 함께 業務領域을 擴大하고 專門人力의 養成, 研究開發(R&D)投資 및 戰略의 導入.
4. 연쇄·小賣業의 脆弱性 補完을 위해 chain化를 유도하여 自體競爭力을 높이고 中小商人들에 對한 經營技法 研修機會 提供 및 間接的인 稅制金融支援等の 政策配慮
5. 特許·商標權等の Royalty負擔 加重을 補填키 위해 OEM方式의 輸出促進과 自體 Brand 開發에 必要한 支援強化.

##### III. 其他의 對應策

UR協商妥結과 關聯하여 政府 및 산하機關 또는 團體等은 分野別 協商 妥結內容과

適切한 對應策을 弘報하여 國民的인 關心 高潮와 意識轉換을 誘導하고, 特히 知的財產權保護에 있어서는 이 分野에 關한 正確하고, 廣範圍한 情報提供과 分野別 專門家들로 構成된 綜合相談機能을 強化하는 等の 多角的이고 積極的인 對應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 5. 結 論

以上에서 UR에 關하여 國內冊字 또는 其他 出版된 資料를 參考로 大略 살펴 보았다. 원래 UR協商의 實質的 妥結時限은 1991年 2月末로 하고 各分上으로는 今年 12月末 終結될 것으로 豫測 하였으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農産物分野에서 EC의 거센 反撥, 卽 補助金削減에 對한 EC의 協商拒絶로 今年內 妥結은 일단 霧散되고 來年1월에 다시 論議하기로 延期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美國側은 UR協商妥結의 決裂에 對한 報復이라도 하듯 韓國等

對美主要輸出國에 對한 通商壓力을 強化시킬 것이라는 報道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UR協商延期는 우리로서는 갑작스런 貿易環境變化로부터의 衝擊을 다소나마 緩和하고 對應力 準備에도 時間을 벌 수 있어 그나마 多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드래도 UR의 妥結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우리는 對外的으로 GATT의 交易自由化, 無差別 및 多者主義原則을 준수함으로써 美國等으로 부터의 雙務的 通商壓力을 避히고 對內的으로는 積極的인 市場開放을 通해 우리 産業全般에 걸친 國際化, 世界化(globalisation)를 完成해 나가도록 總力を 傾注해야 할 것이다. 勿論 그 過程에 있어서 開放과 經濟構造變化에는 必然的으로 一部 階層의 희생과 逆境이 수반될 것이나 이러한 희생과 댓가를 最少化하고 適切히 均分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을 強化해 나간다면 UR協商이 언제 妥結되더라도 우리의 經濟展望은 樂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